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1
----------	-----

2024. 4. 30.(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4월 23일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혼인 건수는 2013년 9,307건에서 2022년 6,185건으로 10년 만에 34%가 감소함. 또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중 '결혼을 해야한다' 고 생각하는 비중도 50%에 그쳤고, 특히 20~30대의 경우 38%에 불과해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 청년층 결혼 기피 사유로 고용 불안, 청년 실업, 일·가정양립 곤란, 청년층 삶의 우선순위 변화(“결혼, 자녀” → “노동”) 등의 요인과 함께 결혼 및 주거 비용의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결혼자금 마련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군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충북 혼인 건수 10년 사이 **33% 감소**: 9,275건('12) → 6,185건('22)
-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비중이 **50% 수준**에 그침
  - 특히 **20~30대**는 **38%**에 불과해 청년층 결혼 기피현상 확대
  - ※ 국민의 결혼에 대한 긍정응답 비중 변화: 69%('02)→50%('22)

○ 결혼 기피사유로는 고용 불안, 청년 실업, 일·가정양립 곤란, 청년층 삶의 우선순위 변화(‘결혼, 자녀’ → ‘노동’) 등의 요인과 함께 결혼 및 주거 비용의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이 출생률을 높이는 주 요인인 만큼,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이 필요함.

○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타 시·도 유관 조례 제정: **4개 시·도(부산, 대전, 충남, 전남)**

##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구분	조 문	규 정 사 항
총칙 규정	제1조	목적	실체 규정	제7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기업 등 지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협력체계
실체 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칙 규정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5조	조성계획 수립			
규정	제6조	지원 사업	부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 “작은 결혼식”의 경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 중 하나인 결혼식에 있어 고비용 혼례라는 허례허식(虛禮虛飾)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기피 분위기를 해소하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결혼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 안 제5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관련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 예식장 제공, 주거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규정한 바,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조사·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으로 소요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토록 규정한 것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뤄온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두어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던 “결혼”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음.
- 이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결혼에 관한 지원 사업 규정을 본 조례로 일원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하며, 지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각 조항들은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집행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II-4. 첫째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단위: 세, %)

연도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sup>1)</sup>	첫째아 모 평균 출산 연령 분포 <sup>1)</sup>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3	26.23	2.1	33.9	52.2	9.8	1.8	0.2	0.0
1995	26.49	1.8	29.8	55.9	10.0	2.2	0.3	0.0
2000	27.69	1.4	18.3	59.9	16.7	3.1	0.6	0.0
2001	27.99	1.4	16.9	57.9	19.6	3.6	0.7	0.1
2002	28.29	1.3	15.7	55.2	23.2	3.9	0.8	0.1
2003	28.58	1.0	13.9	54.6	25.5	4.1	0.8	0.1
2004	28.84	0.9	12.5	52.2	28.9	4.6	0.8	0.1
2005	29.09	0.9	11.1	50.6	31.2	5.3	0.8	0.1
2006	29.28	1.0	10.2	49.2	32.9	6.0	0.8	0.1
2007	29.43	1.0	9.5	48.4	33.3	6.9	0.8	0.1
2008	29.61	0.9	8.9	47.1	34.9	7.3	0.8	0.1
2009	29.85	0.9	8.0	45.3	36.6	8.1	1.0	0.1
2010	30.10	1.0	7.6	41.3	40.1	8.9	1.1	0.1
2011	30.25	1.1	7.7	38.5	41.9	9.4	1.3	0.1
2012	30.50	1.0	7.3	34.7	45.5	9.9	1.4	0.1
2013	30.73	1.1	7.3	31.1	47.7	11.2	1.5	0.0
2014	30.97	1.0	7.0	29.1	48.7	12.4	1.7	0.0
2015	31.20	0.9	6.6	28.5	48.0	14.2	1.9	0.0
2016	31.37	0.8	6.6	27.5	46.8	16.1	2.1	0.1
2017	31.62	0.7	6.1	26.8	45.1	18.6	2.5	0.1
2018	31.89	0.7	5.5	25.4	44.6	20.8	2.9	0.1
2019	32.16	0.6	5.0	24.0	44.8	22.0	3.5	0.1
2020	32.30	0.6	4.7	23.1	45.6	22.1	3.9	0.1
2021	32.61	0.3	3.7	21.6	47.2	22.7	4.4	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연령미상자 제외

## Ⅱ-7. 결혼에 대한 인식<sup>1)</sup>

(단위: %)

연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100.0
2002	25.6	43.5	27.2	1.7	0.2	1.8	100.0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
2014	14.9	41.9	38.9	1.6	0.4	2.2	100.0
2016	12.5	39.3	42.9	2.5	0.6	2.2	100.0
2018	11.1	37.0	46.6	2.5	0.5	2.3	100.0
2020	16.8	34.4	41.4	3.5	0.9	3.0	100.0
2022	15.3	34.8	43.2	2.9	0.7	3.2	100.0
남자	17.6	38.2	37.7	2.2	0.6	3.8	100.0
여자	13.0	31.4	48.7	3.5	0.9	2.6	100.0
13~19세	5.1	24.0	56.8	3.7	1.2	9.2	100.0
20~29세	7.5	27.6	53.5	5.1	1.3	5.1	100.0
30~39세	8.9	31.7	52.8	2.5	1.0	3.0	100.0
40~49세	9.0	33.3	50.6	3.4	1.0	2.6	100.0
50~59세	13.7	39.1	42.6	2.3	0.5	1.8	100.0
60세 이상	30.5	41.0	24.7	1.6	0.2	2.0	100.0
초졸 이하	29.3	34.5	29.1	1.9	0.5	4.7	100.0
중졸	19.5	34.5	38.4	2.5	0.5	4.7	100.0
고졸	13.6	34.2	44.4	3.5	0.9	3.4	100.0
대졸 이상	11.4	35.3	47.7	2.7	0.8	2.1	10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결혼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3. 결혼 비용 지원
4.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5. 신혼부부 주거 지원
6.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
7.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
8.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 및 출생·양육”을 “출생·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기피 현상이 확산 되고 있어,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립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2. 비용 발생 요인

-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등 사업 예산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 사업), 안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충북행복결혼공제 12,062백만원
  - $(800\text{천원} \times 577\text{명} \times 12\text{개월}) + (800\text{천원} \times 431\text{명} \times 12\text{개월}) + (600\text{천원} \times 342\text{명} \times 12\text{개월}) = 12,062\text{백만원}$  \* 기본형 577명, 정부지원형 431명, 농업인 등 342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24년 754백만원, '25년 이후 1,358백만원
  - '24년 최대  $600\text{천원} \times 1,256\text{쌍} = 754\text{백만원}$
  - '25년 이후 최대  $600\text{천원} \times 2,263\text{쌍} = 1,358\text{백만원}$

### 나.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66,496백만원 소요

- (충북행복결혼공제) 연간 12,062백만원, 향후 5년간 60,310백만원 소요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연간 '24년 754백만원, '25년 이후 1,358백만원  
향후 5년간 6,186백만원 소요

### 다. 재원조달방안

- (충북행복결혼공제) 국비 8%, 도비 18%, 시군비 18%, 기타(기업·자부담) 56%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비 50%, 시군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백만원)

구 분	소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2개)	66,496	12,816	13,420	13,420	13,420	13,420
충북행복결혼공제	60,310	12,062	12,062	12,062	12,062	12,062
국 비(8%)	4,655	931	931	931	931	931
도 비(18%)	11,040	2,208	2,208	2,208	2,208	2,208
시군비(18%)	11,035	2,207	2,207	2,207	2,207	2,207
기 타(56%)	33,580	6,716	6,716	6,716	6,716	6,716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6,186	754	1,358	1,358	1,358	1,358
도 비(50%)	3,093	377	679	679	679	679
시군비(50%)	3,093	377	679	679	679	679